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29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818,750원, 교육세 2,681,850원, 가산금 4,872,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피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납부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6. 3. 30.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9.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은 2013. 1. 30. [redacted]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교육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원고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이 위와 같이 체납한 취득세 33,818,750원, 교육세 2,681,850원, 가산금 4,872,3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2. 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소지인 [redacted]구 I건물, J호 '으로 등기취급의 방법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2019. 2. 15.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납부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7. 원고에 대한 납부최고서(이하 '이 사건 납부최고서'라 한다)를 '[redacted]구 K, L호 '으로 등기취급의 방법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납부최고서는 2019. 4. 16.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 이 사건 납부최고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18. B에 153,000,000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받았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혹은 지방세기본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데(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제33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3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발생된다(제33조 제1항).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제17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847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2호에서의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3) 위 각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반송된 사유는 '기타'이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가 아닌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반송 받은 뒤 공시송달하기 전까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주소지를 이탈하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redacted]구 M에서 거주해오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반송사유가 '기타'이므로 위 반송 당시 '수취인의 부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납부최고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redacted]구 K, L호 '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송달처가 어떤 경위로 파악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당시 '수취인의 부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2019. 6. 17.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이하 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27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